

전문건설업 등록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(건설업 등록 등)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건설업등록의 공고) 및 시행규칙 제8조(건설업등록의 공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	주민(법인) 등록번호	등록업종 등록번호	소재지	등록일
주식회사삼기슈퍼테크 한○성 195-87-00084	120111-0765703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검단26-사-01	인천광역시 도담로 26 (오류동)	2026-08-06